

소방청 전문경력관 나군(119구조견담당) 공무원 채용 공고

소방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11월 30일

소방청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예정직급	채용예정인원	근무기관	담당업무	임용예정시기
전문경력관 나군 (119구조견담당)	1명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대구)	119구조견 양성·훈련	2024년 1월(예정)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주요업무
119구조견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9구조견의 양성·훈련·평가○ 119구조견 양성기법 연구개발○ 전국 119구조견 핸들러 양성 및 교육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전문경력관 규정, 공무원 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3.12.29.)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119구조건 담당	응시 자격 요건	자격증	○ 훈련사(1등 또는 사범) 및 반려견지도사 자격(1급 또는 사범) 소지 후 2년 이상의 특수목적견(구조견, 탐지견, 경비견, 수색견 등) 양성·관리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 발급기관] 훈련사한국애견연맹, 반려견지도사한국애견협회
		경력	○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근무경력분야] 특수목적견(구조견, 탐지견, 경비견, 수색견 등) 양성·관리
		학위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분야] 동물관련(축산, 자원동물, 수의학, 애완견 등)계열 [연구경력분야] 특수목적견(구조견, 탐지견, 경비견, 수색견 등) 양성·관리 및 동물치료 분야(수의사) [근무경력분야] 특수목적견(구조견, 탐지견, 경비견, 수색견 등) 양성·관리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 ※ 자격증, 경력, 학위 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
 - ※ 요건 중복선택 또는 미선택 시 부적격으로 처리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3.12.29.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을 구분하여 인정하며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주당 40시간)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예 2년간 주당 20시간 근무를 한 경우 인정되는 경력기간은 1년임)
 - ※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 근무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서류로 보완하여야 함:
 - ① 폐업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 증명서, ④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 위 ①~④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졸업)증명서에 기재된 주전공이 응시요건의 관련 학위에 기재된 전공(학과)인 경우에 한함
- 학위(졸업)증명서에 기재된 학과(전공)명이 응시요건에 기재된 전공(학과)이 아닌 경우 해당 학교에서 위 학과(전공)와 동일한 계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함께 제출(별도 서식 없음, 미제출 시 해당 학위는 불인정될 수 있음)하거나 석사·박사 학위의 경우 학위논문의 내용으로 관련분야 해당 여부를 판단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3.12.10.) 기준]

우대요건	필수요건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공인인증기관(한국애견협회, 한국애견연맹, 한국인명구조견협회), 국외 공인인증기관(국제인명구조견협회) 특수목적견 양성한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특수목적견 양성 경력 <p>*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p>
자격증	- 수의사 면허 소지자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증빙자료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우대요건 경력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특수목적견 양성 경력만 인정
 - ※ 우대요건에서의 경력 산정 시 응시자격으로 활용한 경력은 제외
- 우대요건에서의 경력은 최대 80개월까지 인정하며, 근무기간별(월) 차등 우대함.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하일 때에는 소극적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응시인원	서류전형 합격인원	비고
선발예정인원 4배수 이하	-	소극적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 5배수 이상	선발예정인원 5배수	적극적 서류전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신체검사

- 검사방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 제출방법: 면접시험시 제출 / '23. 12. 29.(금)
- 신체검사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시험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시험에 불합격 처리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함

다.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평정요소>

- | | |
|-------------------|----------------|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면접 중 위원 회피(기피) 시에도 3명 이상 유지가 가능하도록 구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 ①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②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불합격 기준)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6 시험 일정

구분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3. 12. 6.(수) ~ 12. 10.(일)	'23. 12. 21.(목)	'23. 12. 29.(금)	'24. 1. 11.(목)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119고시, 소방청 누리집)발표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119고시, 소방청 누리집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2023. 12. 6.(수) 10:00 ~ 12. 10.(일) 18:00
※ 문의전화: 044-205-7288(채용절차), 044-205-7290(응시자격, 서류안내)
- 접수방법: 119고시(119gosi.kr) 인터넷 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전자우편은 불가능)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해야 함
※ 119고시 접속 시간과 관계없이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부터는 접수 불가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으면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로 처리
 - 응시자는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확인할 것
※ 확인방법: 119고시 → 마이페이지 → 내접수내역

-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 제출

- 응시수수료: 7천원

나. 제출서류

구분	내용
1. 제출서류 목록표	○ 제출서류 해당란에 “☑” 표기
2. 자기소개서 1부	○ A4 2매 이내로 작성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 A4 5매 이내로 작성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필 기재 및 서명
5. 주민등록 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6. 자격요건 자격증 및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석·박사 학위 취득자 제외	○ 훈련사 및 반려견지도사 자격증 사본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상근여부(상근·비상근·전일제·시간제·주당 근무시간 포함하여 표기), 채용 관련분야와 연관성 판단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 상세 기재 ○ 발급담당자 성명·전화번호·이메일 등 연락처 기재(용도는 기관 제출용으로 기재(대표자 또는 회사 직인 포함) ※ 단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 등의 경우는 제외
7.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석·박사 학위 취득자 제외	○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기간 출력·제출
8.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석·박사 학위 취득자 제외	○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기간 출력·제출
9. 근무경력 사실확인서 1부 ※ 석·박사 학위 취득자 제외	○ 폐업에 따른 근무경력 입증(10p 참고)
10.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별지 제6호 서식】 / 면접시험시 제출

아래 사항은 해당자만 제출

11.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학교명 등은 제공하지 않음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 요약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전형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학교명은 전형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기타 학과는 동일계통학과증명서 제출【별지 제9호 서식】	
우 대 요 건	12. 우대요건 경력(재직)증명서 1부 1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14. 소득금액증명원 1부 15. 자격증 사본 1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빅데이터 관련분야 경력 소지자 ※ 우대요건 경력증명서는 “자격요건 경력증명서”에 준하여 담당업무 등 상세기재 ○ 수의사 면허 소지자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서명하여 이메일(dlswo119@korea.kr)로 제출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 1. 12. ~ '24. 2. 11.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4. 1월 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전문경력관으로 선발된 최종합격자는 「전문경력관 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5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7년의 전출 제한 기간이 지나야 전출할 수 있음.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구 분	2023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경력관 나군	4,730,300 (38호봉)	1,962,300 (1호봉)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은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 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주최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할 수단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119구조건담당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건교육대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구조건의 양성·훈련·평가 ○ 119구조건 양성기법 연구개발 ○ 전국 119구조건 핸들러 양성 및 교육 등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 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 의사소통능력, 전문지식 등 ○ (직렬별 역량) 전문성, 분석적사고, 문제해결능력, 상황대응력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특수목적견)에 대한 사육 및 훈련 등에 대한 이론적 전문지식 ○ 교육/훈련 및 사육관리, 수의사 능력 등에 관한 실전 경험과 노하우 등 	
응시 자 격 요 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사(1등 또는 사범) 및 반려견지도사 자격(1급 또는 사범) 소지 후 2년 이상의 특수목적견(구조견, 탐지견, 경비견, 수색견 등) 양성·관리 경력이 있는 사람 ※ 발급기관: 훈련사한국애견연맹, 반려견지도사한국애견협회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경력분야 경력 : 특수목적견 양성·관리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분야 : 특수목적견 양성·관리 ※ 연구경력분야 : 특수목적견 양성·관리 및 동물치료 분야(수의사) ※ 학위분야 : 동물관련(축산, 자원동물, 수의학, 애완동물 등)계열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공인인증기관(한국애견협회, 한국애견연맹, 한국인명구조견협회), 해외 공인인증기관(국제인명구조견협회) 특수목적견 양성한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특수목적견 양성 경력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 ○ 수의사 면허 소지자 ※ 우대요건 경력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특수목적견 양성 경력만 인정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생년월일
전문경력관	나군		

연번		제출목록	제출 여부	
			제출	미제출
1	필수서류	■ 제출서류 목록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2		■ 자기소개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3		■ 직무수행계획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4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5		■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6		■ 자격요건 자격증 및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석·박사 학위 취득자 제외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7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석·박사 학위 취득자 제외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8		■ 소득금액증명원(근무경력 확인용) ※ 석·박사 학위 취득자 제외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9		■ 근무경력 사실확인서(근무경력 확인용) - 폐업에 따른 근무경력 입증 ※ 석·박사 학위 취득자 제외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0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면접시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1	해당자만 제출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1부 - 학위 논문 요약서(석사만 해당) 1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2		■ 우대요건_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우대조건 경력이 있는 사람은 관련 경력 증명서류 제출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상세하게 기재할 것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3		■ 우대요건_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4		■ 우대요건_ 소득금액증명원 1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15		■ 자격증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2023. . .

성명: (서명)

소방청장 귀하

직무수행 계획서

응시번호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 요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글자 색은 검정- 줄 간격 160%로 작성할 것- 보고서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시험공고에 명시된 채용예정 직무분야 업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면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작성 안내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2023. . . 작성자: (서명)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응시부처	소방청
생년월일	응시직급	전문경력관 나군

본인은 소방청에서 시행하는 **전문경력관 나군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소방청이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채용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서명)

소방청장 귀하

근무경력 사실확인서(해산 또는 폐업)

이 사실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 경력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 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 . . ~ . . . (년 월)

입증인(1)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연락처전화번호: - -

입증인(2)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연락처전화번호: - -

붙임: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1부

소방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앞쪽)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⑥ 검사 시				⑧ 주민등록번호	
⑦ 재 사용				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우: ()		
종 양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골격계 질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부 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 격	합격 사유	
합격 여부	[]판 정 보 류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	----------

210mm×297mm[백상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결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119구조건 담당	전문경력관 나군
학위개요	<input type="radio"/> 논문제목 ■ 한글명: ■ 영문명: <input type="radio"/> 심사 연월일: <input type="radio"/> 취득대학/대학원명(세부전공): ※ 취득대학/대학원명은 전형위원회에게는 비공개 처리 <input type="radio"/> 지도교수:	
주요 내용 요약		
<p>I. 연구목적</p> <p>1. 가. 1) 가) (1) (가)</p> <p>II. 연구내용</p> <p>III. 연구 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p>		
<p>본 논문요약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3. .</p> <p style="text-align: center;">응시자: (인)</p>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 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 학력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대학교)	대학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대학원)	대학교	대학원	학과	전공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원)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동 학과는 '2023년 전문경력관 나군(119구조견담당) 채용시험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 연락처: 담당자 (전화번호:)

2023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날인)

소방청장 귀하



소 방 청
National Fire Agency **119**